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954

발의연월일 : 2026. 5. 13.

발 의 자 : 신성범・박덕흠・김위상
엄태영・조은희・정연욱
이인선・박성민・최형두
박성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과 고령화 여파, 소위 3D 업종 기피 현상 심화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농업 분야에서 핵심 노동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음.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급증으로 지자체의 관리의무는 많아졌지만, 전담조직이나 인원 보강 없이 다른 농정 업무와 병행해야 하는 것이 현실임.

이로 인해 지자체 공무원, 고용주, 외국인 근로자들의 브로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고 브로커 문제 해결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5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제2절에 제1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5조의2(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부서의 설치) ①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원 등을 위한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는 관련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
5.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권 침해 및 고용 실태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5조의2(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부서의 설치) ①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원 등을 위한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는 관련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 5.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권 침해 및 고용 실태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